

##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b>제 2 조 (용어의 정의)</b></p> <p>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b>1~6. (생략)</b></p> <p><b>7. (신설)</b></p> <p><b>7. (생략)</b></p> <p><b>8. (생략)</b></p> <p><b>9.</b>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은행”이 다른 기관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p> <p>라. “거래내역조회업무”란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b>본인계좌의</b>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p> <p>마. <b>“계좌실명조회업무”</b>란 “은행”이 <b>“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b>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p> <p><b>10. (생략)</b></p> <p>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p>	<p><b>제 2 조 (용어의 정의)</b></p> <p>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b>1~6. (좌동)</b></p> <p><b>7. “신용카드”란 “사용자”가 ‘참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말하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포함한다.</b></p> <p><b>8.(좌동)</b></p> <p><b>9.(좌동)</b></p> <p><b>10.</b>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은행”이 다른 기관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p> <p>라. “거래내역조회업무”란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b>본인계좌 또는 본인 “신용카드”</b>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p> <p>마. <b>“실명조회업무”</b>란 “은행”이 <b>“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계좌, “신용카드”</b>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p> <p><b>11. (좌동)</b></p> <p>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b>『여신전문금융업법』</b>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p>	<p>7호 추가</p> <p>7호 추가에 따라 한호씩 내림</p> <p>본인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를 반영함</p> <p>서비스 추가에 따른 문구 변경</p> <p>7호 추가에 따라 한호 내림 신용카드 관련 법령 추가</p>

<p><b>제 3 조 (서비스의 종류)</b></p> <p>① “은행”은 “사용자”에게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b>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 계좌정보</b>,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b>사용자 계좌의</b>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p> <p>다. <b>계좌실명조회업무</b> 서비스</p> <p>5.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p> <p>③ “은행”은 서비스 별 거래 가능한 계좌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p> <p><b>제 4 조 (서비스의 제공)</b></p> <p>③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위해 “운영기관”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영업점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b>예금주 본인확인 절차</b>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b>부칙(제정)~부칙(4) (생략)</b>  <b>부칙(5)</b>  <b>(신설)</b></p>	<p>따릅니다.</p> <p><b>제 3 조 (서비스의 종류)</b></p> <p>① “은행”은 “사용자”에게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b>본인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계좌정보 등과 본인 “신용카드”의 카드정보, 카드사용내역, 카드대금청구정보 그리고</b>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b>사용자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의</b>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p> <p>다. <b>실명조회업무</b> 서비스</p> <p>5.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p> <p>③ “은행”은 서비스 별 거래 가능한 계좌, <b>“신용카드”</b>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p> <p><b>제 4 조 (서비스의 제공)</b></p> <p>③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위해 “운영기관”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영업점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b>계좌의 예금주 본인확인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본인확인 절차</b>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b>부칙(제정)~부칙(4) (좌동)</b>  <b>부칙(5)</b>  <b>본 약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b></p>	<p>서비스 추가에 따른 문구 변경</p> <p>서비스 추가에 따른 문구 변경</p> <p>서비스 추가에 따른 용어 추가</p> <p>서비스 추가에 따른 문구 변경</p> <p>개정 시행일자</p>
---	---	--